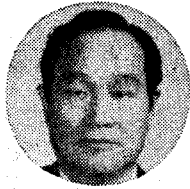


싱가포르 商標制度解說



朴 晚 緒
<辨 理 士>

① 登錄될 수 있는 商標

싱가포르에 있어서 다음에 揭記한 重要事項이 적어도 1내지는 그 하나로서 成立해야만 한다.

- (1) 會社, 個人 또는 組合의 名稱으로서 特別한 方法으로 表示한 것.
- (2) 登錄出願人 또는 그 前營業主의 署名
- (3) 考案한 말
- (4) 其他 特別顯著한 標章

② 商標登錄出願

누구든지 現在 使用하거나 또는 使用하려하는 商標의 所有者임을 主張하여 그 商標를 商標原簿에 登錄할 것을 希望하는 경우에는 所定의 方式에 의한 書面으로 登錄官에 그 登錄출원을 할 수가 있다.

그러나 商標法 (또는 商標條例)의 規定을 留保하여 登錄官은 그 출원을 拒絶하거나 출원을 無條件 또는 조건을 붙여서 變更修正케 하거나 相當한 制限을 加하여 認容할 수가 있다.

그리고 前項과 같이 거절 또는 조건을 붙여서 인용할 경우에는 출원인의 請求로서 그 決定의 理由 및 使用한 資料를 開示하고 그 결정에 대해서는 法院에 不服申請을 할 수가 있다.

법원은 불복신청을 受理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출원인 및 登錄官을 審問하고 出願書 受理의 可否, 受理時의 條件, 變更, 修正 또는 制限範圍 등을 定한다.

한편 商品에 關聯되는 商標登錄出願인이 다음 各號의 1에 該當하는 경우, 출원인이 그 商標를 使用하지 않거나 使用하려 하지 않는다는 理由만으로서 거절하거나 登錄의 許可를 留保할 수는 없다.

(1) 출원인이 設立中의 會社로서 商標에 關聯하여 그 商標를 使用할 目的을 가지고 그 商標를 그 會社에 讓渡할 意圖가 있는 때에 대해서 登錄官이 滿足했을 때.

(2) 商標登錄출원에 商標使用登錄申請이 添付되어 商標登錄출원인이 그 者로 하여금 商標에 關해 그 商標를 使用할 의도를 갖고서 그 商標登錄後 遲滯없이 使用權者로서 登錄할 것에 대해 登錄官이 만족할 때 등이다.

그러나 회사에 商標를 양도할 의도를 갖고 있는 출원인의 名義로서 前述한 權限行使에 의해 商標에 關한 登錄을 했을 경우에는 6個月以內에 그 회사가 商標에 關해되는 商標權者로서 登錄하지 않았으면 그 商標登錄은 그 期間의 滿了로서 効力を 喪失한다.

한편 公衆을 欺瞞하여 混同을 이끄는 등의 理由로서 법원의 保護를 받을 수 없는 事項, 또는 公序良俗에 違反하거나 醜惡한 圖案으로 된 것은 商標로서 登錄될 수가 없다.

③ 公告 및 異議

特許廳은 商標登錄출원을 무조건 또는 조건이나 制限을 붙여서 인용한 경우에는 遲滯없이 所定의 方式에 의해 그 출원을 公告하며 여기서는 모든 조건이나 制限내용을 揭載하게 된다.

한편 누구라도 商標登錄出願公告日로부터 30日以內에 登錄官에게 登錄異議申請을 할 수가 있다.

이의신청에는 그 理由를 開示하여 書面으로 提出해야 하며 이에 따라 登錄官은 이의신청부

본을 출원인에게 送達한다.

출원인이 그 부분을 수리한 후 소정의 기간이 내에 출원이 正當하다는 것을 밝히는 答辯書를 登錄관에 送付하여야 하는데 이것을 懈怠하면 그 출원은 拋棄한 것으로 看做된다.

登錄관이 답변서를 수리하게 되면 그 부분을 또다시 異議申請인에게 送達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當事者雙方을 심문하거나 證據를 取合하여 登錄의 許與與否 및 登錄에 대한 조건 또는 제한의 可否를 결정한다.

그리고 登錄관의 결정에 대해서 법원에 不服申請을 할 수가 있고 나아가서는 법원결정에 불복할 때 抗訴法院에 提訴할 수가 있다.

④ 登錄使用權者

商標權者 以外の 者는 商標登錄(防護商標以外の 登錄)에 관계되는 商品에 登錄使用權者로서 登錄할 수가 있으며 登錄 사용권자가 去來上 관계가 있는 商品에 商標를 사용하는 것이어야 한다.

그리고 누구든지 商標의 登錄사용권자로서 登錄받을 경우, 그 자와 商標권자는 소정의 방식에 의해 書面으로 登錄관에게 신청을 하되 法定宣言書 및 關係書類나 증거를 添付해야 한다.

선언서에 記載할 事項으로서

(1) 雙方間에서 發生된 關係中 使用許諾의 統制程度 및 專用 또는 通常使用權의 區分

(2) 登錄에 관계되는 商品

(3) 商品의 特徵에 관해붙여진 조건이나 제한

(4) 登錄使用權期限의 有無와 기한이 있을 경우는 그 存續期間등이다.

이와 같은 要件들이 充足되면 書類등의 審査를 하고 그 商品에 관해 商標를 사용하는 것이 公益에 違反하지 않는 限 登錄使用權者로서 登錄할 수가 있다.

⑤ 登錄存續期間

商標登錄은 그 효력이 7년이며 更新할 수가 있다.

登錄商標권자의 신청에 의해 갱신登錄의 有效

期間은 最初의 登錄 또는 갱신된 登錄의 存續期間滿了日로부터 14년간이다.

更新手數料의 未納理由로서 商標登錄이 원부에서 말소되었으면 그 商標는 말소된 날로부터 1년 이내는 出願目的을 위해 원부에 登錄된 商標로 간주한다.

⑥ 商標의 不使用

商標登錄은 다음 이유로서 利害關係人의 신청으로 指定商品에 관하여 원부에서 말소된다.

(1) 商標登錄출원인이 그 商標를 그 商品에 사용할 善意的意圖가 없고 그 회사 또는 登錄사용권자가 역시 商標사용에 선의적의도가 없었을 때

(2) 利害關係인이 申請日 1個月以前까지 繼續하여 5년 이상 그 권리자로서 그 商品에 관하여 登錄商標를 선의로 사용하지 않았을 때 등이다.

⑦ 商標의 讓渡 및 移轉

登錄商標는 營業과 더불어 또는 營業과 分離하여 양도나 移轉을 할 수가 있을 뿐만 아니라 指定商品의 全部 또는 그 一部에 대해서 양도나 이전을 할 수가 있다.

商標登錄에 관계되는 商品에 관하여 그 登錄商標를 양도하려는 商標권자는 그 商品 또는 그 商標의 類似性에 비추어 商標의 양도가 有效한지의 여부를 判定하는 證明書의 交付를 登錄관에게 신청할 수가 있다.

⑧ 優先權主張

英國 또는 商標相互保護協定締結을 希望하는 國家에 商標를 登錄했거나 그 登錄출원을 했을 경우 그 當事者 또는 法定代理人, 讓受人은 他人에 優先하여 싱가포르에서 그 商標登錄을 받을 수가 있으며 그 登錄日字는 英國 또는 外國에 출원한 日字와 同一하게 본다.

다만 그 商標登錄출원은 영국이나 外國에 商標登錄 출원을 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야 하고 登錄된 날 이전에 발생한 權利侵害의 損害賠償請求權利는 商標권자에 賦與하지는 않는다.